

ILTA 윤리강령

(2000년 3월 밴쿠버의 ILTA 연차 대회에서 채택됨)

국제언어평가학회(ILTA)가 마련한 이 제1차 윤리강령은 윤리 철학에 기반을 두고 전문직 종사자들의 올바른 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일련의 원칙들이다. 이 윤리강령은 법령이나 규정이 아니며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대신 모든 언어평가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윤리적 행동의 준거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이 윤리강령은 준비중인 별도의 실무강령과 연계되어 있으며, 선의, 무악의성(無惡意性), 정의, 자율 및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 등이 혼합된 원칙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윤리강령은 9 개의 근본 원칙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각 원칙에는 그 원칙의 성격을 전반적으로 명료하게 밝혀주는 일련의 주석들을 달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주석들은 ILTA 회원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보다 일반적으로는, ILTA 회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ILTA 회원들이나 이 전문직이 무엇을 열망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런 원칙들을 적용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고충과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주석들은 더 나아가서 강령의 제재조치들도 상술하고 있는데, 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ILTA 윤리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ILTA 회원 지위 박탈과 같은 중대한 처벌이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강령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연결되는) 다른 유사한 윤리강령들로부터 유래되기는 했지만, 전세계에 걸쳐 계속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의 균형성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강령은 관련 실무강령과 연계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모든 종류의 전문직 강령들은 전문직으로서의 양심과 판단에 관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이 ILTA 윤리강령은 언어평가자에게 자신이 승낙한 다른 강령이 부과하는 의무와 책임, 혹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규정에 의한 의무를 면제해주지는 않는다.

언어평가자는 독립된 도덕적 행위주체이며, 때로는 자신의 도덕적 입장이 어떤 특정한 절차에 참여하는 일과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개인은 자신의 도덕적 신념에 반하는 절차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언어평가자는 자신의 신념과 어긋나는 상황에 가담하도록 요구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예견되는 일자리를 받아들일 때에는, 고용주나 장래의 고용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 고용주와 동료들은 그런 언어평가자가 직장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현재 ILTA가 준비중인) 실무강령은 본 윤리강령에 대해 예시 설명을 해준다. 윤리강령이 언어평가 전문직의 도덕과 이상에 초점을 맞추는데 비해, 실무강령은 이 분야의 실무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들을 제시하며, 전문직의 비행(非行)과 비전문가적 행위를 밝혀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리강령과 실무강령 두 가지 모두는 이 전문직내의 요구와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때가 되면 이 강령들은 언어평가 분야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윤리강령은 5년 이내, 혹은 필요하면 그보다 더 조기에 재검토를 받게 될 것이다.

원칙 1

언어평가자는 수험자들 각각의 인간성과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언어평가자는 수험자들에게 가능한 한 최선의 전문적 배려를 제공해야 하며, 언어평가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요구,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여야 한다.

주석

- 언어평가자는 연령, 성별, 인종, 민족, 성적 취향, 언어적 배경, 신조, 정치적 소속, 혹은 종교를 이유로 수험자들을 차별하거나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수험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자신의 사회적, 영적, 정치적, 혹은 이념적 가치 등을 의식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언어평가자는 자신의 고객을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나 시행하고 있는 조사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된다.

- 언어평가자와 수험자간에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윤리적이다.
- (학생을 포함하여) 수험자들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언어평가의 교육 및 연구수행은 수험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그들의 존엄성과 사생활권을 존중해야 한다. 수험자들은 자신들이 참여를 거부하더라도 언어평가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교육, 연구, 개발, 평가시행)의 질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해주어야 한다. 수험자들이 개입되는 모든 형태의 매체들(종이, 전자, 비디오, 오디오)의 사용은 그러한 매체가 2차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전에 수험자에게 알려주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언어평가자는 자신이 생산한 정보를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가능한 한 가장 의미 있는 방법으로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험자들은 자신들의 관심 사항 모든 것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원칙 2

언어평가자는 자신의 직업적 지위로 인해 획득한 수험자들에 관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이런 정보를 공유할 때는 전문가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주석

- 복사물, 팩스, 전산화된 시험 기록, 데이터 뱅크 등의 광범위한 사용과,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점증하는 석명 요구, 그리고 수험자들로부터 획득한 정보의 사적인 성격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언어평가자는 수험자들이 가지는 비밀유지 권리를 존중하고, 평가자-수험자의 관계와 연관된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의무가 있다.
- 비밀유지는 절대적일 수는 없는데, 특히 기록물들이 입학 및 임명을 위해 경쟁할지도 모르는 학생들에 관한 경우 그러하다. 언어평가자로서의 직업적 기본적 책무로서 비밀을 지켜주는 일과 평가자가 사회에 대해 가지는 보다 넓은 책임과의 사이에 조심스런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 마찬가지로, 적절한 경우에는, 언어평가자의 전문직 동료들도 그 전문직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수험자 이외의 다른 수험자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런 경우, 데이터 접근을 허락 받은 사람들은 수험자 비밀 유지에 동의해야 한다.

- 수험자로부터 직접 수집한 것이 아닌 (예를 들어,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서 수집한) 다른 데이터도 동일한 비밀유지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 비밀을 공개해야 하는 법적인 요구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언어평가자가 법정이나 조사 위원회에서 전문 감정인으로 소환될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서 언어평가자는 비밀유지라는 직업상의 의무에서 해방될 수 있다.

원칙 3

언어평가자는 어떤 형태의 예비평가, 실험, 처치, 혹은 기타 연구활동을 수행할 때, 국가적 및 국제적 지침들에 구현되어 있는 관련 윤리 원칙들을 모두 고수해야 한다.

주석

- 언어평가의 진보는 연구에 달려있는데, 연구에는 필연적으로 인간이 연구대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학문탐구의 원리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 전문분야의 문헌 지식에 철저하게 기반을 두어야 하며, 최고의 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
- 모든 연구는 정당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제안된 연구가 제시된 연구질문에 대한 해답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 연구 대상자의 인권은 항상 과학적, 혹은 사회적 이해(利害)에 우선한다.
- 연구 대상자에게 불편이나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 연구가 주는 이득을 염두에 두기는 해야 하지만, 그 이득이 그런 불편이나 위험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예상치 못한 유해한 효과가 발생하면, 그 연구는 언제나 중지하든지 수정해야 한다.
- 연구들이 최고의 과학적,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독립적인 윤리위원회가 모든 연구 계획서를 평가해야 한다.

- 연구의 목적, 방법, 위험성, 불편함에 관련된 정보는 미리 연구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런 정보는 연구 대상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 연구 대상자의 동의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압력이나 강제, 협박이 없어야 한다.
- 연구 대상자들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전 어느 시점에서라도 자유롭게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연구에서 빠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거부가 대상자들에 대한 처우를 위태롭게 해서 안 된다.
- 의존 관계에 있는 연구 대상자(예를 들어, 학생, 노령자, 저능숙도 학습자)의 경우 사전 동의를 얻을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만약 어린이가 충분히 성숙하고 이해를 한다면 본인으로부터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연구 중에 획득한 비밀 정보는 승인된 연구 원본에 명시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연구 결과의 발표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한다.
- 연구 보고서의 발표는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을 식별할 수 있게 해서 안 된다.

원칙 4

언어평가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오용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주석

- 언어평가자는 수험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알면서도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평가자가 개입하여 진척시키는 일이 수험자의 이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수험자들에게 다른 상황을 위해 고안된 능숙도 시험의 예비평가의 연구 대상으로 참여하도록 부탁할 때) 그런 성격을 절대적으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사회의 통상적인 도덕적 가치, 종교적 가치 등의 가치에 순응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환영 받지

못하는 이민자라는 신분이 언어 능력 평가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법률적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언어평가자는 고문이나 기타 다른 형태의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벌을 시행하는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 (1975년 도쿄 선언을 참조 할 것).

원칙 5

언어평가자는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전문적 지식을 개발하고, 이 지식을 동료나 여타 언어 전문직 종사자들과 공유하여야 한다.

주석

- 계속해서 학습하고 자신의 지식을 고양시키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근본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수험자들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이다.
- 언어평가자는 활용 가능한 다양한 방식의 평생교육을 활용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진행되고 있는 언어평가 프로그램 참가, 전문학술대회 참가, 관련 전문 출판물 정기구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언어평가자는 전문 지식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동료들 및 기타 관련 언어 전문직 사람들과 상호 교류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 언어평가자는 공인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학술회의에 참여함으로써 동료들과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여야 한다.
- 언어평가자는 훈련을 받고 있는 언어평가자들의 교육과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며, 그런 훈련의 핵심 필수사항들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언어평가자는 보다 넓은 언어 관련 직업 분야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원칙 6

언어평가자는 언어평가라는 전문직의 진실성을 옹호하고 유지할 책임을 공유하여야 한다.

주석

- 언어평가자는 동료간에 신뢰감과 공동 책임감을 함양함으로써, 그 전문직의 진실성을 증진하고 고양하여야 한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간에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솔직성과 존경심을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여야 한다.
- 언어평가자는 사회를 대신해 규범을 개발하고 실천한다. 그런 이유로 언어평가자는 특권적 위치에 있는데 여기에는 전문적 직무 수행과 그러한 직무 수행의 진실성을 반영하는 사적인 삶의 측면에서 적절한 개인적, 도덕적 표준을 유지할 책무가 수반된다.
- 언어평가자는 동료가 전문가답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관계 당국에 보고를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 이 윤리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행위는 극도로 심각한 일로 간주되어, ILTA 회원 지위 박탈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원칙 7

언어평가자는 사회적 역할로서, 언어평가, 평가 및 교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그런 서비스들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일을 촉진하며, 언어 학습 및 언어 능숙도에 관하여 사회를 교육하는 데에 기여하여야 한다.

주석

- 다수의 수험자들이 비원어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권리가 박탈되고 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언어평가자는 언어평가의 제공이나 평가 서비스의 개선을 증진시켜야 하는 특수 의무가 있다.

- 언어평가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언어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언어평가자는 수험자들에게 가능한 한 최선의 언어평가 서비스를 확실하게 제공하는 것을 적극 옹호하고 동료들과 힘을 합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언어평가자는 언어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자문기구, 법률기구, 자원봉사기구, 사업체 등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언어평가자는 재정적 한계나 기타 이유로, 평가 서비스가 최소한의 기준에도 못 미칠 때는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언어평가자는 수험자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평가 서비스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할 수도 있다.
- 언어평가자는 관련이 있는 과학적인 정보와 확립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해석하고 사회에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는, 언어평가자는 자신이 어떤 공인 전문기관의 대변인인지 아닌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만약 표명한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와 다를 때는 그러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언어평가자는 인종, 불평등, 자녀 양육과 같은 민감한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적인 토론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들에 기반하여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
- 언어평가자는 전문 지식에 기반한 교육자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구별해야 한다.
- 언어평가자는 이 원칙하에 자신의 책임을 이행할 때 자기 자랑이나 동료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언어평가자는 자신만이 모든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확실히 하여야 한다.

원칙 8

언어평가자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책무를 유념해야 하는데, 그런 책무가 가끔은 수험자 및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대한 책임과 상충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주석

- (정부 부서, 전문직 기관, 대학, 학교, 회사 등) 기관을 위해 평가 결과를 얻는 경우, 언어평가자는 평가 결과가 수험자 및 기타 이해 당사자(가족, 장래의 고용주 등)들에게 아무리 반갑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 자신이 일하고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언어평가자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평가들을 수행하는데 대한 의무를 인식해야 한다. 그런 평가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그러하다. 만약 의견불일치의 정도가 양심적 반대를 해야 할 만큼 충분히 강하면 언어평가자는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원칙 9

언어평가자는 제공하는 평가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미칠 단기적, 장기적 잠재 효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양심상의 이유로 자신들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한다.

주석

- 전문인으로서 언어평가자는 자신에게 위탁된 용역사업의 윤리적 측면에서의 후속 결과들을 평가할 책임을 가진다. 모든 가능한 최종 결과를 다 고려할 수는 없지만, 있을 수 있는 후속 결과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자신의 전문가적 견해로 볼 때 그런 후속 결과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서비스 제공을 철회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동료 언어평가자들과 상의하여서 자신들의 견해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동료들의 견해가 다르다면, 양심에 의하여 개별적인 입장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